

품명	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직물				
HS code	5407.91				
관세율(%)	MFN	VK·AK FTA	RCEP		
			'23	'24	'25
	12	0	9.6	8.4	7.2



선정 사유	▶ 해당 품목의 對베 수출액은 등락이 있으나 '24년 12월 기준 최근 5년간의 수출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1.4%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함		
	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(HS code 5407.91) (단위 : 천 불, %)		
	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	2019	1,463	-45.6
	2020	1,861	27.2
	2021	1,176	-36.8
	2022	2,278	93.7
	2023	1,088	-52.3
	2023.12	1,088	-52.3
	2024.12	3,930	261.4
	▶ 해당 품목은 합성섬유로 만든 필라멘트사(연속적인 긴 섬유로 이루어진 실, filament yarn)를 사용한 날실(경사, warp)과 씨실(위사, weft)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직조한 섬유제품으로 가볍고 높은 내구성으로 인하여 스포츠웨어, 산업용·생활용 직물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됨		
	▶ 베트남은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스포츠웨어 등 여러 섬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자재 중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한국산 원자재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, 동 품목을 4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		

우리나라 對베
수출동향

(HS 5407.91)

- ▶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직물(HS 5407.91)의 對베 수출금액은 등락이 있으며 이 중 “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직물(HS 5407.91-3000)”이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함. 동 품목의 수출금액은 '24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약 468.8%가 증가하며 최근 3년간의 수출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인 약 366만 달러를 기록함

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(HS code 5407.91 세부품목)

(단위 : 천 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4분기
		총계	2,278	1,088	3,930
1	5407.91-1000	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	63	130	112
2	5407.91-2000	폴리에스테르의 것	233	146	25
3	5407.91-3000	아크릴 중합체의 것	1,938	645	3,667
4	5407.91-9000	기타	44	167	127
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5407.9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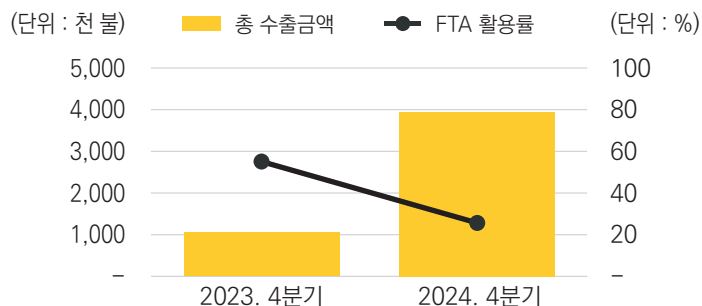
- ▶ HS 5407.91(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직물)의 對베 수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FTA 활용률은 감소함

- FTA 활용률 '23년 4분기 55.3%, '24년 4분기 26.3%로 나타남
-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한-베트남 FTA CTH or RVC 40%, 한-아세안 FTA WO or CTH or RVC 40%, RCEP CTH 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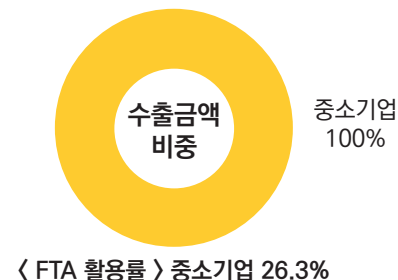
- ▶ '24년 4분기 기준 HS 5407.9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중소기업 100.0%임

-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26.3% 임

[HS 5407.91 對베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3~2024)]



[HS 5407.9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4분기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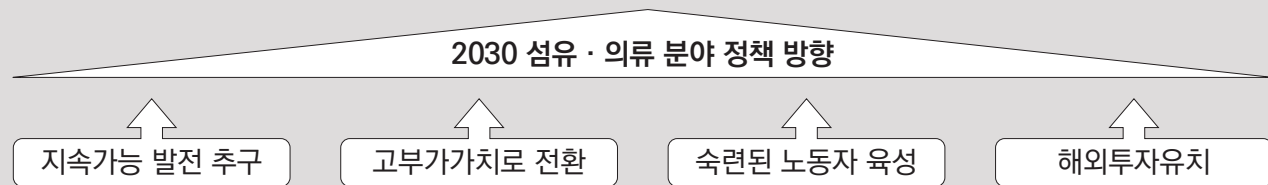
베트남 수입 동향

- ▶ '23년 수입 금액 기준 베트남의 HS 5407.91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, 한국, 일본, 대만, 프랑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3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(71.5%), 한국(10.7%), 일본(10.5%) 순이며, 이들 국가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섬유와 의류 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베트남 정부는 섬유·직조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'2030년 베트남 섬유·의류 및 신발 산업 발전 전략(3218/QD-BCT)'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음

[2030년 베트남 섬유·의류 및 신발 산업 발전 전략(3218/QD-BCT) 일부]



- ▶ 베트남의 섬유·의류 산업의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과 일본, EU, 한국 등이며 EVFTA의 누적규정에 따라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의류의 경우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(fabrics)은 베트남산으로 간주돼 EVFTA 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함
- 유의할 점은 누적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-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으로 특히 직물의 가격이 6,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특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기에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음

[EU-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]



출처: 관세청

시사점

- ▶ 동 선정품목은 베트남측 MFN 12%, 한-베/한-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0%, RCEP 특혜관세율의 경우 연차별로 낮아져 '24년 8.4%, '25년 7.2%로 최대 12%의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임
- ▶ 더욱이 베트남 의류 생산자가 주요 수출국인 EU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 직물의 누적적용이 가능하여 FTA 활용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우위가 있기에 한-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기업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
 - HS 5407 품목의 한-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투입 원재료 및 특정 생산공정의 수행에 따라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각 품목별 가공공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함
 - 또한 유럽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규정 자가 평가 도구(ROSA, Rules of origin self-assessment tool)를 활용하면, 한-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음

[한-EU FTA 상 제54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]

- 고무사를 넣은 것: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
 - 기타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.
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.
 - 코이어사
 - 천연섬유
 - 인조스테이플섬유(카드,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)
 -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
 - 종이
 -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(정련, 표백, 머머서라이징, 열처리, 기모, 캘린더링, 방축가공, 영구마감처리, 데커타이징, 침투,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)을 한 것. 다만,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.5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.
- ※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6 참조

[ROSA를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화면]

My Trade Assistant

Goods + ROSA
 Services and Investment
 Procurement
 Restrictions imposed by Russia / Belarus

Including ROSA Rules of Origin Self-Assessment [How to use this form](#) [Disclaimer](#)

Product name or HS code: 540791
 Country from: South Korea
 Country to: Spain
 Search

*mandatory field

- ▶ 현재 동 선정품목의 수출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정부는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또한 역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